"시니어의 당당한 사회참여, 즐거운 동행"

광주북구시니어클럽

수 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관내 어린이집

(경 유)

제 목 2027년 어린이집지원사업 수요처 모집 및 사업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광주북구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고 일자리에 대한 욕구충족과 경제·사회활동 참여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입니다.

3. 광주 북구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27년 어린이집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파견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

붙 임 : 1. 어린이집지원사업 안내 1부.
2. 어린이집지원사업 신청서 1부.
3. 노인일자리 수요처 행동강령 1부. 끝.

광주북구시니어클럽관장

10/20

담 당 유인숙 팀 장 조현모 관 장 송윤주

협조자

시 행 북시26-289 (2026. 10. 20) 접수 ()

우 612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림로 94-6 / http://www.silver114.or.kr
전 화 062-512-3521 FAX 062-512-3524 / gjcsc@hanmail.net / 공개

어린이집 지원사업 안내

■ 노인역량활용 어린이집지원사업

어린이집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보육지원, 급·간식지원, 원내·외 환경정리, 화단정리 등을 지원하는 , 1.3세대 간 친밀감 형성 및 세대 통합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.

○ 사업 운영 안내

구 분	노인역량활용 어린이집지원사업	비고
대상	북구 관내 어린이집	
활동기간	2월~11월(10개월)	·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있을 수 있음
활동시간	기관사정에 따라 시간은 자율조정	·단 오전 8시 이전 /오후 6시 이후 활동 불가
활동일	일3시간, 주5회, 월20일(60시간)	·시니어클럽 교육포함
활동인원	1명 또는 2명 이상(남,여가능)	
활동내용	급·배식도움, 보육지원 및 원내외 환경정리	·창틀, 화장실 물청소는 어르신 낙상위험으로 불가

※파견 제외 대상※

-어린이집 인근 내 참여자가 없을 경우 (어르신 도보로 20분이상 거리 시) 제외
-전년도 협약 후 사업 기간내 중도포기 한 수요처 제외
-참여자가 활동하기 열악한 환경에 대한 상호간 조율이 어려운 곳 제외
-협약된 업무 외의 활동을 지시하는 경우 제외
-참여자 민원 (인격,인권 침해 관련) 수요처 제외
-서류관리, 현장점검 등 어르신 활동 관련 업무에 비협조적인 수요처 제외

수요처 신청서 작성안내

■ 선발 기준

1. 선발 우선순위 (신규신청 어린이집 - 가정어린이집 - 민간어린이집 - 국공립어린이집 - 직장어린이집 - 사회복지법인)
2. 선발된 참여자 주소지에 따른 배치 (※**근거리에 참여자가 없을시 파견하지 못함**)
3. 전년도 수요처 중 참여자 만족도와 담당자 의견 반영
4. **폐원 예정인 수요처는 신청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**

■ 협조 사항

- 협약서 체결
- 사전·사후 설문조사 실시 협조
- 참여자와 관련된 상황 연락 (기상 및 재해상황 비상연락 등) 협조
- 참여자 출·결 관리 준수(미출근 시 기관에 연락), 참여자 인권 준수
- 참여자 출근부 등 서류 관리 협조
- 시니어클럽 담당자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실시 (사진촬영 포함)
- **보건증 발급 비용은 수요처 부담 입니다**

※근무 중 참여자의 인권침해, 정해진 업무를 제외한 과도한 업무 부과 및 근무시간 초과 등 문제 발생시 중도에 사업 철회 가능합니다.

■ 신청 등록 방법및 유의사항 안내

1.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카페 http://cafe.daum.net/gjcsc 에 접속.

→ 왼쪽하단 노인역량활용 → 어린이집지원사업단 클릭.

2. 팩스와 메일은 누락 위험으로 카페 신청만 받음을 양해해 주세요

3. 신청기한 : 26년 11월2일(월) 오전9시 ~ 26년 11월6일(금) 오후6시까지

※ 신청서 작성시 전화번호란에 업무담당자 핸드폰 번호/이메일 주소 꼭!! 기재바랍니다

- 문의전화: (062)512-3521 어린이집 지원사업 담당자 : 유인숙

27년 어린이집지원사업 서비스 수요조사 및 신청서(수요처용)

<table>
<tr><td>신청기관</td><td colspan="2">어린이집</td><td>사업자번호
(고유번호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신청자(대표)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소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요구분야</td><td colspan="4">☐ 급배식 도움 ☐ 환경정리 도움 ☐ 보육 도움</td></tr>
<tr><td>희망인원</td><td colspan="4">☐ 오전 (명) ☐ 오후 (명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사업기간</td><td rowspan="2">2027년 1월중 ~
2027년 11월</td><td rowspan="2">근무형태
(주 소정
근로15시간)</td><td colspan="2">☐ 주 5회/일 3시간/월 20일(60시간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☐기타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서 비 스
이용현황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3">☐ 이용하지 않음 (신규신청)
☐ 당해기관 서비스 이용
(사업명 :)
☐ 타기관 서비스 이용
(기관명 : , 사업명 :)</td><td>이용시기</td><td>☐ 2025년
☐ 2026년
☐ 최초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수요처 안전실태조사를 위한 설문*</td></tr>
<tr><td>위험성평가
실시 여부</td><td>☐ 실시
☐ 미실시</td></tr>
</table>

○ 본 기관은 "수요처 행동강령"을 준수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.

○ 본 기관은 위와 같이 노인역량활용사업 서비스 이용(제공)을 희망하며,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○ 본 기관은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, 사고발생 시 피해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지원에 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기관 어린이집
신 청 인 (인 또는 서명)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종합
의견</td><td rowspan="2"></td><td>수행기관명</td><td>광주북구시니어클럽</td></tr>
<tr><td>담당자</td><td>유인숙</td></tr>
</table>

* 위험성평가 실시여부는 안전실태조사를 위한 단순 설문으로, 서비스 신청과는 무관

노인일자리 수요처 행동강령

□ 행동강령 검토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, 수요처는 참여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고, 안정된 환경 속에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도 시켜서는 안 된다.

* 참여자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치 않음에도 청소, 조리 및 가사 등의 활동을 강요하거나 수요처장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행위 강요 등

**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수요처와 참여자 간 활동내용을 변경·추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양자 간 합의 실시

○ 수요처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, 정서적 학대, 성적 학대, 경제적 학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수요처의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수행기관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.

* 신체적 학대(폭행, 구타, 구속 및 협박 등), 정서적 학대(폭언, 무시, 기피, 따돌림 등), 성적 학대(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등), 경제적 학대(활동비 착취 등)

○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, 참여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, 침해받는 경우 회복과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* 수요처 재배정 및 서비스 제한 등

2.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활동하는 환경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.

○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조정해야 한다.

* 안전교육 실시 필수 및 사업 시작 전 상해보험 가입 등

○ 수요처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*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처 간담회 등 실시, 안전장비 구입·지급 등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활동 중 재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개입해 병원에 동행해 치료를 받게 하고, 수행기관은 상해보험 수급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

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.

○ 수요처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혹한기·혹서기 등 활동이 힘든 시기에 노인의 건강상 안전을 고려하여 활동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 월 15시간 이내 단축운영, 혹서기·혹한기 대비 참여노인 교육 등

3. 사생활 보장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활동 과정에서 얻은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하며,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찍지 않는다.

○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활동 중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.

4.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, 투표 등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.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,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.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,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5.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
○ 수요처 및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 간담회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○ 수요처 및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나 그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○ 수요처 및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그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
6.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일률적인 헤어스타일 및 옷차림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.

* 활동을 위한 유니폼 착용 제외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물건이나 소지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.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헌금, 공양, 후원금 및 기부금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.